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257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」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
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
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4월 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☐ 2019.7.1.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
1~6급)이 명시된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☐ 개정내용 : 용어변경

현 행	개 정
- 장애등급 - 장애 1~3급 - 장애 4~6급 - 장애 1~6급 - 등급외 -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	- 장애정도 - 심한장애 - 심하지 않은 장애 - 등록 장애인 - 장애미해당 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
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
(예관동)), 문의전화:3396-5374, FAX:3396-8734, 메일:joju0316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
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」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포괄적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, 법적 안정성과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 제3급 장애인중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, 지체장애 제3급일 경우 상지 장애인은 제외한다.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·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·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계약자가직접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·2급인 사람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장애등급 3급 이상”을 “심한 장애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장애등급 3급 이상”을 “심한 장애”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 정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☐ 신문·복권판매대 ☐ 매점(10㎡이하) 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				
설치허가 (위탁계약) 신청서				
신 청 인	성명	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		세대원수 (신청인 포함)
	신청구분 (해당란에√표시)	☐ 장애인 ☐ 한부모가족 ☐ 노인 ☐ 북한이탈주민 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	장애정도 (장애인인경우)
	수급자 대상여부 (해당란에√표시)	☐ 수급(생계급여, 의료급여) ☐ 수급자가 아님	세대원중 장애인 유무여부	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☐신문·복권판매대 ☐매점(10㎡이하) ☐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(위탁계약)를(을)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(인)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				
접수번호	제 호			
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(인)				
첨부서류 : 국가유공자 수첩 등(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)				

[별표]

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

순위	장 애 인	노인	한부모가족	국가유공자 등, 독립유공자 등, 북한이탈주민
1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 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 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 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 자
2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 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 급자		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 자를 제외한 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 자를 제외한 자

※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

1.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
2.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
3. 세대원수가 많은 자
4.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5조(이용대상)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. 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 제3급 장애인중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, 지체장애 제3급일 경우 상지 장애인은 제외한다. 2.(생략)	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5조(이용대상) ----- ----- -----.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.(현행과 같음)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·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<u>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</u>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,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	「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·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 ----- ----- -----.

1.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
2.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
3. 세대원수가 많은 자

4.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「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」 제2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. 1.2.(생 략)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 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서 「장애 인복지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이 1·2급인 사람 4.(생 략)	4.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「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」 제2조(지원대상) ----- -----. 1.2.(현행과 같음) 3.----- ----- -----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.(현행과 같음)
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) ①·②(생 략)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 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 1.(생 략)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 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.~5.(생 략) ④·⑤(생 략)	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(현행과 같음) 2.----- -- <u>심한 장애</u>----- ----- -- 3.~5.(현행과 같음) ④·⑤(현행과 같음)
「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(수강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	「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(수강료의 감면) -----
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1.(생략)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

3.~5.(생략)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」

제6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(생략)

-----.

1.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 심한 장애 -----

3.~5.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」

제6조(지원내용)① -----

----- 장애 정도 -----

-----.

②(현행과 같음)